##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95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서지영・안상훈・조승환

최은석 • 이헌승 • 성일종

김선교 · 송언석 · 김용태

김도읍 · 서천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본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힘든 참가인에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참가인에 대한 행정 심판 절차상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참가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법률 제 호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18조"를 "제18조, 제18조의2"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참가인의 지위) ①・②	제22조(참가인의 지위)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	③		
표자 자격 및 서류 제출에 관			
하여는 <u>제18조</u> , 제19조 및 이	<u>제18조, 제18조의2</u>		
조 제2항을 준용한다.	<u>.</u>		